제307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(2022. 7. 28.)에서 의결된 고흥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이에 공포한다.

2022년 7월 29일

고흥군의회의장 이 재 학

규칙 제2022-47호

고흥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6조의2 중 "의장은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·결정을 하거나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"를 "①의장은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(이하 "주민조례발안법"이라 한다)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·결정을 하거나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"로 한다.

제66조의2에 제2항 및 제3항, 제4항, 제5항,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위원장은 주민조례발안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(이하"청구인의 대표자 등"이라 한다)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(청구인의 대표자 등과의 질의·답변을 포함한다)를 들을 수 있다.

③위원장은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일 3일 전까지 청구인의 대표자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출석요청은 일시·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
④제2항에 따른 출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아니할 수 있다. 다만,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그 이유서를 심사일의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이 경우 위원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.

⑤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심사하는 안건과 관련 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⑥주민조례발안법 제13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61조제1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제안자"는 "청구인의 대표자 등"으로 본다.

제66조의3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.

①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소관 상임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.

②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,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.

제66조의4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.

①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②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57조 및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6조의2(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) 의장은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·결정을 하거나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<신 설>	제66조의2(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) ①의장은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(이하 "주민조례발안법"이라 한다.)제11조제3항에 따라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미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 ②위원장은 주민조례발안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(이하"청구인의 대표자 등"이라 한다)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(청구인의 대표자 등과의 질의·답변을 포함한다)를 들을 수 있다. ③위원장은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일 3일 전까지 청구인의 대표자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출석요청은 일시·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
현 행	개 정 안
	④제2항에 따른 출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아니할 수 있다. 다만,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그 이유서를 심사일의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이 경우 위원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. ⑤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 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 ⑥주민조례발안법 제13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61조제1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제안자”는 “청구인의 대표자 등”으로 본다.

현 행	개 정 안
제66조의3(주민조례청구 청구인 명부 이의신청) ①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. ②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. ③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,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.	제66조의3(주민조례청구 청구인 명부 이의신청) ①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소관 상임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. ②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,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. ③<삭 제>
제66조의4(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) ①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②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	제66조의4(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) ①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 ②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57조 및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현 행	개 정 안
③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52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	③<삭 제>